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.07.22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운영 관련 상위법이 제정되어 조례 상 인용 법령을 보완하고 치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을 제한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인용 법령 변경

: 「노인복지법」 → 「치매관리법」 (안 제17조)

나. 치매지원센터 재 위탁 운영기간을 한차례로 제한하고, 위탁 운영에 관하여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신설 보완함(안 제 4조제3항, 제4항)

다.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관련 조항 삭제(안 제 9조 ~ 제 1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(참조: 의약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

페이지 **【<http://www.sdm.go.kr/>】** (알림·참여→1.알림마당→입법예고)에
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
(우편번호 120-826)

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02-330-8685, 팩스 02- 330-1854

※ 이 조례(규칙)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
【Http://www.sdm.go.kr】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